

기 안 지

1184

28

고
시

기 안 자	경부과기획계 경찰 정상모	전화 번호	459	공 보	필 요	불필요
	계장	과장	부시장	시장		
	경부과장	경부과장	경부과장	경부과장		
협성 기년 분류 경수 감	자명 안임 호호 유신 조	문서 65. 5. 10	총무과장 지도대장 65. 5. 10	교통과장 65. 6. 4	보통 한정	62
계	목	서울특별시 고시 제 887호 내부절재 각안 참조				
도로 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종 안 개정						
(제 1 안)						
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7 호에 의거 교통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사 준수사항을 별첨과 같이 추가 제정코자 합니다.						
우첨 고시 안 1부 끝						
(제 2 안)						
수신 수신처 참조						
제목 동건			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878호 (65. 3. 4)						

확시
정
6월 4일
7월 15일

78

710 512

도로 교통법이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종 별첨
과 같이 개정 하였기 "보고" "통보" "하달" 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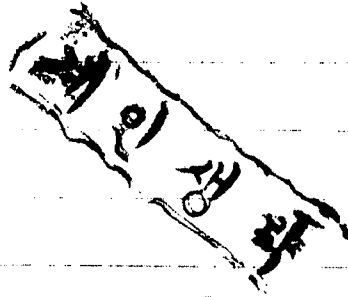
유침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호 호
우신취 가12 나2-나11. 거1-거22. 서국1.

(제 3 안)

서정무 139-2045.

우신 공보실장

제목 동건



서울특별시 고시 제 878호 (65. 3. 4) 도로
교통법이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종 별첨과

같이 개정 하였기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

유침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7호

서울特別市 告示 第887號
道路 交通法에 依한 制限指示에
關한 告示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西紀 1965 年 6 月 4 日.

서울特別市長 尹 致 暎
道路 交通法에 依한 制限指示에 關한
告示中 改正

三. 運轉士의 遵守事項 "아"項 다음에
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자. 夜間에 燈火運行하는 荷車輛
은 交行이 頻繁한 道路에서는 前照燈의
照射方向을 繼續下向 하여야 한다.